

한국벤처투자 벤처펀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2021.10.

한국벤처투자

목 차

[Part 1 : 공통 사항]

I. 목적 및 적용범위

- 1. 목적 3
- 2. 적용범위 3

II. 자펀드 운용

- 1. 회계감사인 선정 4
- 2. 투자조합 운용보고 6
- 3. 매월 보고 자료 점검(운용사) 10
- 4. 투자금 실사 및 보고 11
- 5. 자펀드 Valuation 실시 및 보고 14
- 6. 자펀드 해산 및 청산 절차 15
- 7. 관리보수 조정 사항 20
- 8. 소액출자펀드에 대한 관리기준 21
- 9. 자펀드 운용인력 변경처리 및 관리보수 삭감기준 22
- 10. 권리·의무 부여된 조합 지분 양수도 및 배분 기준 24

III. 투자 및 사후관리

- 1. 투자 전(前) 확인사항 25
- 2. 투자심의위원회 운영 27
- 3. 투자계약 체결 31
- 4. 피투자기업 사후관리 34
- 5. 소셜임팩트펀드 민간 자문단 심의회 운영 36

[Part 2 : 문화콘텐츠 분야]

I. 목적 및 적용범위

- 1. 목적 41
- 2. 적용범위 41

II. 문화·콘텐츠 자펀드 운용

- 1. 투자 가능 분야 42
- 2. 주요 출자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의 거래 43

III. 프로젝트 투자

- 1. 프로젝트 투자의 정의 46
- 2. 해외 프로젝트 투자 47
- 3. 프로젝트 투자의 무비율 산정 기준 48
- 4. 원금보장성 프로젝트 투자 49
- 5. 표준계약서 사용 50
- 6. 영화 인센티브 관련 투자 제한 50
- 7. 프로젝트 제작 관련 투자기준 50

IV. 프로젝트 투자 사후관리

- 1. 투자심의자료 51
- 2. 투자 시 VICS 입력항목 52
- 3. 별도계좌 개설·운영 56
- 4. 감사보고서 제출 57

[Part 3 : FAQ]

문의사항이나 개정요청사항은 다음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김지영 과장 ☎ 02-2156-2455

한국벤처투자 벤처펀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공통 사항)

I. 목적 및 적용범위

1. 목적

- 한국벤처투자 벤처펀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이하‘가이드라인’)은 업무 집행조합원이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모펀드의 출자펀드(이하‘자펀드’)를 결성 목적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방향을 제공하기 위해 발간

2. 적용범위

- 본 가이드라인은 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법 및 그 밖의 한국벤처투자 권고사항으로 이루어짐
- 본 내용은 구속력 있는 법규는 아니지만, 업무집행조합원의 조합 관리를 위한 세부 적용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급적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참조하여 업무 처리할 것을 권고함
- 본 가이드라인에 사례로 제시되는 부분은 당사에서 임의로 재편집한 내용으로 참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실제 업무에 인용할 때는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프로젝트 투자

- 프로젝트 투자(지식재산권 투자 제외)는 본 가이드라인 “문화콘텐츠 분야”의 관련 내용을 준용할 것

II. 자펀드 운용

1. 회계감사인 선정

- o 업무집행조합원은 아래 방법으로 자펀드의 회계감사인을 조합원총회에서 선정·변경할 수 있음

① 자펀드 회계감사인 선정

- o 업무집행조합원은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회계법인을 선임하고, ‘회계감사인 자격요건 체크리스트’⁴⁾ 작성 및 보관
 - 대표전담인력 책임 하에 회계감사, 투자금 사용처 실사 등 진행

< 자펀드 회계법인 자격요건 >

- 1) 금융감독원 제출 최근 회계법인사업보고서 기준 공인회계사 수 20인 이상
- 2) 최근사업연도 매출액 30억 원 이상
- 3) 벤처조합*에 대한 감사 유경험자(담당회계사) 우대

* 벤처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창업·벤처전문 PEF, CRC

※ 담당 회계사 참여제한

· 감액가이드라인 미준수 등 업무 부실, 모태펀드 업무관련 비협조 및 중대한 비위사실 확인시 2년간 모태펀드 자조합 회계감사인 참여제한(홈페이지 공지)

* 한국모태펀드가 일반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자펀드(지분율 10% 미만)의 경우, 상기 자격요건은 권고사항임

② 회계감사보수 산정방법

- o 아래 기준을 고려, 업무집행조합원과 회계법인이 협의
 - 단, 최대 회계감사보수를 초과할 경우 조합원들에게 보고 필요

연도말 납입액 기준	최대 회계감사보수 (VAT 별도)
100억원 이하	250만원
100억원 초과 50억원당	70만원

2. 투자조합 운용보고

-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 진행단계 및 기한 내에 아래 사항을 VICS 시스템을 통해 전자보고 진행함

① 투자 진행별 보고 항목 및 내용

구분	보고 항목	보고 기한	보고 내용	첨부문서	비고
투자 심의 위원회 (투심위)	개최 계획 통보	개최일 5영업일 전	개최일자/시간/ 투자심사 내용	심사보고서/ 준법사항 체크리스트	준법사항체 크 리스트는 반드시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발굴자& 심사자&사후관리자 기여율을 기재
	결과보고	투심위 종료 후 2영업일 이내 (투자금 집행 전)	투심위 결과	의사록	서명날인 필요
투자 실행	투자집행 사전보고	자금집행일 1영업일전	투자집행 사전 예고		전화 및 이메일 통보
	투자 약정 사항	자금집행일 ~ 다음달 7일	발굴자&심사자 & 사 후 관 리 자 기여율		입력된 기여율 변경불가 *준법사항체크리스트에 기재된 기여율과 일치 하도록 입력
	투자계약서 제출	투자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투심위 의결내용 반영	투자계약서	원본 스캔 *투자계약서 제출 시 VICS를 통해 투자조건 일치여부 및 의무기재 사항 작성 여부 확인
	실물인도 (수탁은행에 제출)	투자일로부터 15영업일 (국내 투자) 혹은 1개월 (해외투자) 이내	실물주권 제출		*해외투자의 경우 실제 투자사실에 관한 현지 법무법인 등의 확인서를 제출
출 자 금	출자계획	매월 10일까지	다음달 출자금 납입 요청계획		전산 통지 필수

구분	보고 항목	보고 기한	보고 내용	첨부문서	비고
	출자금 납입 통지	규약에 정해진 통지기간	추가출자금 납입 요청일 및 요청 금액	추가출자 공문/ 계좌사본	전산 통지 필수
	출자	사유발생일+ 2영업일	입출금일& 등록일(신고일)		실제 입금일과 등록일 차이 유의. 당사 출자증서는 수탁은행으로 발송 (FAQ 참조)
	배분		원금 & 수익 & 원천징수 구분		
투자 의무 비율 달성 점검	투자 의무비율 달성 계획	투자기간 종료 6개월 전	투자 의무비율 미달성 사유 및 달성계획		<u>투자 의무비율 미달성 조합</u> 에 한해 시행
	투자기간 종료 후 의무투자 집행 여부	투자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의무투자 신규 집행 가능여부 및 향후계획		
조합원 총회	개최통보	규약에 정해진 통보기간 이내(10영업일 전)	총회 의안	공문/의안/ 의결서/참석장/(필요시)기간 단축동의서	공문은 <u>원본 스캔</u>
	총회결과보고	총회 종료 후 2영업일 이내	총회 결과	총회의사록	<u>서명날인 된 원본파일</u>
투자 보고회	개최통보	규약에 정해진 통보기간 내	개최공문	개최공문	공문은 <u>원본 스캔</u>

② 시기별 정기보고 항목 및 내용

구분	보고 항목	보고 기한	보고내용	첨부문서	비고
월별	월별 전자보고	매월말일+7일	투자/회수 실적 (투자조건, 회수유형 등), 월별 재무제표, 금융상품, 유가증권 등		<u>기보고내용 수정은 KMC과 사전협의 필요</u>

분기별	고용현황	반기 말일 + 7일	투자기업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총 고용인원 및 청년(만15~39세)고용인원 현황 자료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현황	VICS시스템 활용 - 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해당 규약 우선
반기별	온기/반기 투자 보고	2Q : 반기종료일+2개월 4Q : 결산종료일+3개월	영업보고/재무제표/ 출자금납입 및 배분계획 보고	영업보고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전 일정 협의
	자펀드 Valuation (반기별)	2Q, 4Q : 투자보고회 개최와 연동	자펀드 평가		VICS시스템 활용

* 특이사항은 수시보고를 활용, 즉각 보고(보고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③ 수시보고 항목 및 내용

대항목명	중항목명	수시보고 소항목명	
운용사 관련	경영진	운용사 대주주 또는 경영진 변동 (대표이사 변경 등)	
		경영진, 대주주에 대한 제재, 피소 및 법원 판결 결과	
		대주주에 대한 감사의견 비적정(의견거절, 부적정, 한정) 발생	
	운용사	운용사에 대한 제재, 피소 및 법원 판결 결과	
		본건 펀드 관련 규약, 법규 위반 사항 발생	
		재무상황변경(증자, 감자, 부도, 파산, 회사정리, 개시절차 등)	
조합운용 관련	운용인력	대표펀드매니저에 대한 제재, 피소 및 법원 판결 결과	
		대표펀드매니저, 핵심운용인력 타조합 참여 또는 겸직사유 발생	
	조합원	출자금 지정납입일 위반, 불응 발생	
		관리보수 환입 이슈 발생	
	투자기업 관련	법적분쟁	조합 또는 제3자와의 법적분쟁
		계약	투자조건 변경
투자계약위반 (투자금 사용용도 변경 등)			
기업일반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추진, 결과 등)	
		상장, 상장폐지, 관리종목지정 등	
재무상황변경(감자, 감액, 부도, 파산 등)			
기타	기타	상기 사항 이외 펀드 규약 등에 보고사항으로 명시된 사항 발생	

* 수시보고 사항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사전적으로 보고요망(보고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④ 기타 입력 항목 및 내용

- 투자기업의 주요 정보 입력
- GP 및 LP 등 결성된 조합과 관련된 주요 정보 입력

보고 항목		보고내용	보고시점
투자기업 정보	기업개요	· 업체명/법인번호/사업자번호/대표이사명/업종/주요제품/설립일/벤처기업확인번호/주소/휴폐업일/부도일/상장일/상장시장명/종업원수/기업분야키워드 등	· 최초 투자시 · 변동 발생시
	주주명부	· 5% 이상 의미 있는 개인 주주 및 모든 기관투자자 · 총발행주수/액면가/기준일자	· 최초 투자시 · 변동 발생시 · 회계연도말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 최초 투자시 · 회계연도말 · 반기말
	프로젝트투자	· 프로젝트명/프로젝트유형/제작사/배급사/순제작비/마케팅비/총제작비/감독/주연배우/크랭크업날짜/크랭크인날짜/개봉일자/상영종료일자/총관객수/BEP관객수/시놉시스 등	· 최초 투자시 · 변동 발생시 · 1차 정산 시
GP/조합 정보	운용사 정보	· 회사명, 대표이사,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설립일, 주소, 대표전화번호	· 조합 등록시 · 변동 발생시
	인사정보	· 대표펀드매니저, 투자담당심사역, 관리담당심사역(연락처 포함)	· 조합 등록시 · 변동 발생시

* 「기업분야키워드」 선택방법 : 투자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사업 분야 키워드를 '4차산업혁명분야'에서 택1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선택), '기타분야'에서 해당되는 복수 분야 선택

⑤ LLC형 투자조합의 준법모니터링

- LLC형 투자조합(마이크로 VC펀드 포함)의 준법모니터링은 외부(회계법인, 법무법인)에 위탁 할 수 있음. 이 경우 비용은 조합에서 부담함
- 준법 모니터링을 내부에서 직접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전문적인 준법감시인 채용을 권고함

3. 매월 보고 자료 점검(운용사)

- o 한국모태펀드는 업무집행조합원 보고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매월 7일 이후 자펀드의 수탁은행에서 접수된 조합자산목록과 업무집행조합원의 보고를 대조하고 있음. 업무집행조합원은 보고 내용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 확인 필요
 - ① 매월 초 수탁은행으로부터 직전월말 기준 조합재산현황 보고서 (VICS 활용 가능)를 접수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조합재산 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
 - ② 수탁은행과 조합재산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여 수탁은행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입력자료 수정
 - ③ 수탁은행과 일치된 조합재산현황 자료를 매월 7일까지 VICS 통해 한국모태펀드에 전송

※ 피투자기업 사업자등록번호에 유의

4. 투자금 실사 및 보고

구분	주요 내용		
투자금 사용용도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심보고서에 기재된 투자금 사용용도를 투자계약서에 기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투자계약서 필수 기재사항</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금 사용처 투자금 사용처에 대한 실사 근거 및 제재방안 대상거래*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 및 발생 시 처리방안 <p>* 대상거래 : 제3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p> </td> </tr> </tbody> </table>	투자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금 사용처 투자금 사용처에 대한 실사 근거 및 제재방안 대상거래*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 및 발생 시 처리방안 <p>* 대상거래 : 제3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p>
투자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금 사용처 투자금 사용처에 대한 실사 근거 및 제재방안 대상거래*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 및 발생 시 처리방안 <p>* 대상거래 : 제3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p>			
투자금 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가 집행된 후 1년 이내 (단, 투자금 70% 미만 소진 시 2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약이 우선 투자금 실사보고서를 VICS를 통해 모태펀드에 제출 실사결과를 영업보고서 등에 기재하여 조합원에게 보고 		
단서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 집행 후 1년 도래 시점에 업무집행조합원은 피투자 기업의 투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실사 진행 여부 결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금 70% 이상 소진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약에 따라 회계감사인과 투자금 실사 진행 투자금 70% 미만 소진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금 미소진 사유, 향후 사용 계획 등을 조합원에 수시보고하고, 실사 기한을 최대 1년 연기 투자금 실사를 투자 집행 후 2년 이내 진행하고, 최종 실사보고서를 조합원에게 보고 최종 실사보고서 결과가 투자금의 70% 미만 소진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실사보고서 결과와 소진 계획을 조합원에게 수시보고하고, 추후 업무집행조합원 비용으로 투자금 재실사 진행 		
투자금 실사 결과 문제점 발생 시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점 발견 시 투자금액 회수 등 조치내역을 모태펀드에 VICS 수시보고 		

o 투자금 실사 비용 기준

비용 기준	비고
건당 100만원(VAT 별도) 이내 * 단, 출장비, 인쇄비 별도 협의 가능	복수의 조합에서 공동투자 한 기업의 경우 <u>공동으로 실사 진행 및 비용 분담 가능</u> * 단, 실사보고서에 조합별 투자 금액에 대한 실사 내용 구분 표기 필요

<투자금 실사관련 투자계약서 의무기재사항 예시>

(예시1) 투자금 사용목적

피투자기업은 본 계약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음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당초 체결한 투자계약서의 투자금 사용목적에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 2. -----

주) 사용목적 예시 : 적외선 필터 양산을 위한 클린룸 설치/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 해외법인 설립 등 해외시장 진출비용 등

(예시2) 투자금 사용목적 위반 및 대상거래 발생시 제재방안

피투자기업이 투자금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투자자는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가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피투자기업은 투자자에게 투자금액 및 이에 대하여 납입기일로부터 본 계약해지일까지는 투자금액의 연 0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투자금액의 연 0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예시3) 투자금액 사용처 실사

투자기업은 투자자의 요청으로 투자자가 지명하는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투자금 납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투자금액 사용처 실사를 받아야 한다. 투자가 집행된 후 1년 이내에 투자금을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 기한을 최대 1년 연기하여 집행된 후 2년 이내에 투자금액 사용처 실사를 받아야 한다.

(예시4) 대상거래 인지방안

피투자기업은 제3자에게 자금대여 또는 제3자의 주식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시행일로부터 00일 이전에 서면으로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금의 사용내역을 매월(분기별) 투자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투자금 실사 보고서 서식 예시>

<표지>

**투자조합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자금 실사보고서
 ****년 *월 *일

실사자: **회계법인
 보고자: 업무집행조합원 **창업투자

<내용>

I. 일반사항

투자자	업무집행조합원	**창업투자(주)
	투자조합명	*****투자조합
	투자일자	20**년 **월 **일
	투자금액	***원
	투자방식	상환우선주(*,***주)
피투자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소재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II. 투자금 사용목적

투심위보고서	투자계약서	비고
1. ***	1. ***	
2. ***	2. ***	

III. 투자금의 집행내역

1. *** (투자금 사용용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단위: 원)

구분 비목	계획 (A)	사용금액 (B)	잔액 (C)	집행비율(%) (B/A)×100
1. ****				
- ***				%
2. ****				
- ***				

주) 필요 시 세부 집행 내역 기재

IV. 대상거래 발생여부

투자금을 제3자에게 자금대여 또는 제3자의 주식을 매입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기재

V. 종합의견

회계법인별 내부 표현 방식에 따라 실사의 대상, 실사의 한계, 실사 종합의견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을 간략히 기재함.

5. 자펀드 Valuation 실시 및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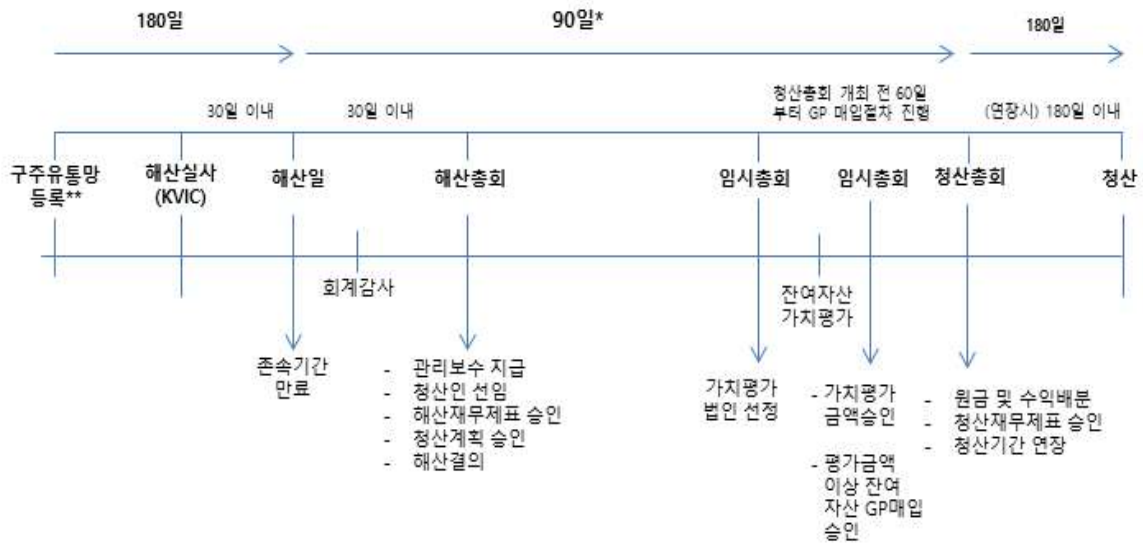
- o 업무집행조합원은 VICS 시스템에 아래와 같이 반기별 투자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보고하여야 함 (대상 : 운용 및 청산 중 조합)

구분	주요 내용
VICS 설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install.k-vic.co.kr 접속, 로그인 후 프로그램 자동 설치 - VICS의 관리자ID 보유 시 VICS 사용자추가를 통해 추가적으로 접근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음
Valuation 실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VICS → 자조합가치평가[1404]</u> 에서 가치평가 진행 - 자세한 방법은 ‘KVIC 자펀드 가치평가시스템 사용자 설명서’* 및 ‘투자자산 평가 가이드라인’ 참조 * 홈페이지(www.kvic.or.kr) > 알림마당 > 기타공지에서 다운로드 - <u>매년 3월말(전년도 12월말 기준), 8월말(당해년도 6월말 기준) 까지 보고</u>
Valuation 실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기업 평가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장주식 평가시 제3자거래가, 유사기업평가, 기타 합리적인 평가방법, Milestone 순으로 적용(가치평가 Hierarchy 준수) - 시장가 평가를 제외한 방법들은 한 업체에 복수 평가방법 적용 가능 - 해외 투자자산의 경우 반기말/온기말 환율로 환산하여 평가 - 전액감액 기업도 평가 대상임을 유의 (1,000원으로 평가) - 회수완료 기업은 평가 대상 아님 · 프로젝트투자 평가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프로젝트투자는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u>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프로젝트 런칭(개봉 등) 이전 : Milestone방법 적용 b) 프로젝트 런칭(개봉 등) 이후 : DCF방법 적용

6. 자펀드 해산 및 청산 절차

- 0 자펀드 계약상 해산사유가 발생할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여 조합원간에 주요 일정 사전 협의 등 원활히 해산 및 청산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함

< 해산 및 청산절차 >



* 기준 계약상 청산기한은 90일이 원칙. 단, 추가 청산기간이 필요할 경우 최대 1년 이내에서 청산계획에 반영하고 조합원 총회 특별결의 득할 것

** GP가 잔여자산 인수 시 평가가치 이상으로 매입

- 0 해산 및 청산 절차는 해산 예정일(존속기간 만료일)을 D-Day로 하여 다음 일정으로 진행

날짜	내역	세부내용	비고
D-180 ~ D+90	구주유통망 등록	· 잔여자산 구주유통망 의무 등록	· 만기일 이후 잔여 자산 구주유통망 90일 이상 등록 필요
~ D-30	해산계획 수립 및 협의	· 잔여 유가증권 처리방법 · 청산기간 중 자산배분방법, 해산실사 일정 협의	
D-30 ~ D-Day	해산실사	· 특별조합원 주도로 실시 (필요시 외부전문가 참여 가능) · 포트폴리오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1~3일 실시 · 청산기간 협의	· 조합비용 등 조합규약 준수여부 · 투자 및 회수 적정성 평가

날짜	내역	세부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의 타출자자 요청이 있을 경우 해산실사 결과보고서 공유 · 단, 당사가 특별조합원이 아닐 경우 펀드의 최대출자자 등이 해산실사를 진행하고 당사 앞 결과를 공유하면 당사의 해산실사 절차로 준용 가능 		
D-Day ~ D+30	회계감사	· 해산일을 마지막 회계연도 결산일로 하여 외부감사 진행	· 해산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회계감사 후 즉시	해산총회	(의안예시) · 제1호 : 관리보수 지급 · 제2호 : 원금 및 수익금 배분(필요시) · 제3호 : 재무제표 승인 · 제4호 : 조합 청산계획 승인 (청산기한 설정, 청산인 선임, 잔여자산 회수방안, 배분계획 등) · 제5호 : 해산 결의(D-Day가 해산일)		
해산일 ~ 청산총회 -60일	매각진행	· 잔여자산 GP 자율처분		
청산총회 ~	매각되지 않은 잔여자산의 경우	잔여자산 가치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평가방법은 ‘투자자산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름 · 잔여자산 평가 시 GP는 평가대상 법인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하여 평가기관에 주요정보 제공 체크리스트¹⁾를 제출 · 가치평가 결과를 조합원총회에서 승인한 후, GP 인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산총회 60일 전까지 임시총회를 통해 평가법인 선정 완료 · 업무집행조합원과 조합의 회계감사인인 잔여자산 평가법인으로 선정될 수 없음
		업무집행조합원의 잔여자산 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여자산평가 금액 이상으로 GP인수하여야 하며, 조합원총회 승인 필요(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10조 제1항 참고) · GP가 잔여자산 인수 시, 추가배분 안건 상정 권고 - 추가배분 안건 및 요건²⁾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회 승인 이후 즉시 GP 매입 · 가치평가 승인 후 제3자가 잔여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평가액 이상으로 인수하여야 하나, 총회 승인 대상은 아님
	최종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약상 우선손실총당이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배분액 계산 · 성과보수 계산은 조합규약 뒤에 첨부된 ‘성과보수 산정예시’ 등에 따라 산정 · 총회를 거쳐 최종 배분 승인 	· 현금배분이 원칙	
	청산 회계감사	· 잔여자산이 없으므로 재무상태표상 모든 계정값 “0”	· 감사 기준일은 최종배분일	
청산총회		(의안예시) · 제1호 : 청산 재무제표 승인 · 제2호 : 청산 결의	· 반드시 청산기한 내 실시하며, 불가능한 경우 기간연장 총회	

사업 환경 및 실적	사업 관련 기술적인 환경, 시장 환경, 제도적 환경 및 규제 환경에 있어 유의적인 변화		
	대규모 계약 체결 또는 체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 관련 계약서 또는 양해각서 등		
	사업에 유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 (예 : 신규시설 투자· 시설증설 결정, 채무면제, 신물질·신기술에 관한 특허권 또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양수도 중요한 임상시험 단계 개시,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과금 체계 결정·변경 등)		
지분 변동 관련	투자 이후 증자· 감자로 인한 지분변동 및 주요주주 변동사항		
	CB, BW, Stock Option, RCPS 등 지분회석 가능성이 있는 증권 발행내역 및 발행조건		
평가 주요 정보	상장 여부 (특히 코넥스 상장기업의 경우 활성시장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기준일 전 3개월 간 일평균 거래금액 및 거래 주수 제공)		
	평가일 기준 6개월 내 제3자 거래가격* 및 이와 관련 특수관계인 또는 피투자기업 이해관계인의 개입 여부 * 프리보드 공시가격 및 장외시장 거래가격 포함		
	과거 Valuation 추세 및 적용평가방법 * Valuation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 ** 평가방법 변경 적용 시 해당 사유		
	상환권을 보유한 증권 또는 채권의 경우 상환권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필요자료 일체 * 이를 기초로 평가법인은 상환권 행사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 후 상환권 가치가 고려된 평가가치를 산출하여야 함. 또한, 상환권 행사 가능 여부 에 대해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함.		
기타	주요 투자계약 조건 위반사항		
	기타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평가대상 법인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업무집행조합원 : (인)

대표펀드매니저 : (인)

평가담당자 : (인)

* 잔여자산 가치평가 후, 평가금액 승인을 위한 임시총회 시 GP는 평가기관에 제공한 상기 주요정보
제공 체크리스트를 총회 자료로 제출

2) 추가배분 안건 및 요건

- GP의 의무 이행을 충실히 할 목적으로, GP가 잔여자산인수 후 단기간 내 상당규모 이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청산 이후 추가 배분하는 청산총회 안건 상정
 - (추가배분 요건) GP인수 후 6개월 내 매각 또는 정산에 따른 차익이 발생하고, 해당 차익이 GP인수가액의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보고 의무) GP는 상당 규모 이상의 이익(추가배분 요건 충족) 취득 시 즉시 해당 사실을 조합원에게 보고하고 청산총회 안건에 따라 추가 배분을 진행

<미처분 유가증권 평가 시 오류 발생 유의사례>

- (사례1) 업무집행조합원이 미처분 유가증권 인수 후 3~8개월 내에 환매 등의 방식으로 시세차익 발생
- (사례2) 수익가치 산정 시 차기연도 손익을 적자로 추정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평가금액 산정/ 실제 차기연도 손익이 약 10억 정도 흑자 발생
- (사례3) 동일기업에 2개 이상 자펀드에서 투자를 하였고, 타 자펀드에서 약 6개월 이전에 해산 진행(주식에 대하여 평가실시)한 후 당 자펀드 계정에서 해산 진행 / 주당 평가금액이 30%이상 차이 발생
- (사례4) 피투자기업의 최근 중요한 영업 변동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
(예 : 타 운용사의 최근 투자가격 존재)

< 벤처캐피탈 구주 유통망 활용>

- 조합 해산 시, 비현금화된 자산에 대해 벤처캐피탈 구주유통망을 통해 공개 매각 진행 (www.peinvestor.net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운영)
 - 만기 12개월 이전 ~ 6개월 이전 : 보유자산 **자율** 등록
 - 만기 6개월 이전 ~ 존속기간 만료 : 보유자산 **의무** 등록
- 운영절차 : 조합만기 1년 전~존속기한 만료일에 VICS → 투자자산전송(구주유통망[1325])에서 미처분 자산을 구주유통망에 등록 가능

7. 관리보수 조정 사항

- 자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업무집행조합원(특수관계인 포함)이 받은 아래의 수수료 등은 관리보수에서 조정하여야 함

관리보수 제외 항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와 직접 연관되어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수수료 	부가가치세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집행조합원의 직원이 투자대상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하거나 기타 업무감독 또는 경영자문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일체의 보수 또는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상 지급받는 위약금 기타 일체의 금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공동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공동투자자 또는 공동투자를 위하여 설립된 컨소시움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등 일체의 금원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자문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일체의 금원 	총회 일반결의 득한 경우 제외

- － 투자자산 감액시기 설정 착오 등 관리보수 산정 오류 발생으로 기 수령 관리보수 사후 환입 시, 조정된 관리보수 차액과 해당 금액에 대한 발생 이자*를 조합계좌로 환입하여야 함

* (이자율) 조합계좌(MMDA 등)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산정

(이자 발생 기간) 계산 착오 발생시점(기 지급일)부터 관리보수 환입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KVIC 사후관리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

8. 소액출자펀드에 대한 관리기준

- 한국모태펀드가 일반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한 경우 앵커출자자 관리 기준 적용하며 아래의 관리절차 미실시

중분류	소분류	모태펀드가 일반유한책임조합원인 조합
해산	자펀드 해산실사 (해산 1개월전)	미실시
중간점검	자펀드 중간점검 (결성후 2년 경과시*)	미실시

* 문화계정 자펀드 및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결성후 1년 경과시에 중간점검 시행

9. 자펀드 운용인력 변경처리 및 관리보수 삭감기준

① 기본방향

- 자펀드의 책임운용 강화를 위해 운용인력 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유도
- 변경횟수, 경위 및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처리
- 관리보수 삭감과 별도로 해당 참여인력에 대해 모태펀드 출자사업 시 감점 등 제재
- 자펀드 운용인력의 수는 선정 당시 모태펀드 출자사업 공고문에 기재된 규모에 따른 인력구성 요건을 준수

(예시) 2021년 출자사업 공고문상 인력구성 요건

조합 규모	최소 인력 구성
300억원 이하 (2017년 이전은 200억원 이하)	2
300억원 초과 ~ 800억원 이하 (2017년 이전은 200억원 초과~800억원 이하)	3
800억원 초과	4

*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대표펀드매니저는 소관 법령에 따른 전문인력이어야 함

② 운용인력 변경 시 처리기준

- ◆ 변경 승인여부 및 관리보수 삭감(안)은 해당 조합 규약에 따른 조합원총회 결의를 통해 최종 결정
 - * GP 및 GP 특수관계인의 출자좌수는 의결 정족수 미산입
- ◆ 변경된 운용인력이 투심위원직을 겸임하고 있었던 경우, 조합원 총회 결의를 통해 운용인력변경과 함께 투심위원도 변경하여야 함을 유의
- ◆ 삭감 기준일이 포함된 연도의 관리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삭감을 적용

③ 관리보수의 삭감

- 1년 이내 2회 이상 관리보수 삭감 시 산정 기준 : 삭감 조치의 선후 관계없이 합산하여 삭감
 (예시) 관리보수 5% 삭감 조치 뒤 해당 연도 이내 다시 5% 삭감 시 해당연도 관리보수의 총 10% 삭감(5% + 5%)

o 결성 후 1년 이내 변경 시

구분	삭감 기준
대표펀드매니저	관리보수 총액(12개월 기준)의 20% 삭감
기타 핵심운용인력	관리보수 총액(12개월 기준)의 10% 삭감

o 결성 후 1년 이후 변경 시

- 변경횟수를 고려한 삭감 기준

누적 변경횟수	삭감여부
1회 이하	X
1회 초과	○

* 기타 핵심운용인력은 변경횟수 1회당 0.5회로 산정

** 겸직으로 인한 운용인력 변경은 변경횟수 1회당 1.5회로 산정

- 귀책사유를 고려한 삭감 기준

귀책사유	삭감여부
사망, 질병	X
출산·육아휴직	X
정년퇴직(만60세)	X

* 상기 사유 외 특별조합원이 인정하는 경우, KVIC 협의 후 관리보수 삭감률 할인 적용 가능

** 삭감대상이 아닌 사유로 인한 인력변경은 누적 변경횟수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음

- 이외 삭감 시 적용되는 고려요소 : 의무투자금액, 배분총액

10. 권리 · 의무 부여된 조합 지분 양수도 및 배분 기준

① 권리 및 의무 부과된 조합 지분의 양수도 기준

- 우선손실충당, 우선배분, 유한책임조합원의 모태펀드 지분에 대한 콜옵션 등 권리 및 의무가 부과된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여야 함
- 양수인이 해당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였음을 규약을 변경하여 명시

예) GP 및 GP특수관계인이 우선손실충당 의무를 갖는 조합

⇒ GP특수관계인의 지분을 양수받는 LP가 해당 우선손실충당 의무까지 승계

② 콜옵션이 부여된 조합 자산의 배분 기준

- 모태펀드 지분에 대한 콜옵션이 부여된 조합은 배분 시, 회수자산별 원금과 수익을 동일 비율로 매칭하여 함께 배분함이 원칙

예) A자산 회수 : 회수된 투자원금 10억원, 수익 5억원 발생

⇒ 이 중 원금 5억원(50%)을 배분하는 경우, 수익 2.5억원(50%)도 함께 배분

III. 투자 및 사후관리

1. 투자 전(前) 확인사항

- 투자검토 대상 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투자 검토 시 확인하여야함
 - 주요 매출이 투자금지 업종에서 발생하였다면 투자 불가
 - 국세체납, 법령위반 등의 사실이 있다면 투자심사보고서와 준법사항 체크리스트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투자 검토시 필수 확인 내용	확인 방법	비고
투자금지 업종 여부	- 주요 매출이 발생하는 업종으로 판단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이용)	
창업자/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여부	- 창업자 :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 벤처기업 : www.venturein.or.kr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www.innobiz.net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www.mainbiz.go.kr(자료실)	
부실기업(국세체납, 가압류, 소송 등) 여부, 법령위반(배임, 횡령, 사기 등) 여부	- 심사 및 자금 집행일 기준으로 국세체납, 배임 및 횡령, 사기 등 업무 관련 법령위반 여부 등을 확인 (심사 전 확인 권장)	프로젝트 투자 포함

* 창업자 판단을 위한 사업 개시일에 대한 정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1. 원칙 :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날로 하되 다음 기준을 따른다.

① 창업자가 법인형태로 신규 사업을 개시한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이 사업개시일

②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예외로 한다

2. 예외 :

①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 사업과 같은 종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이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다만 ①의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창업으로 인정한다.

①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②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

(참고) 창업 여부 사례

주 체	사업장소	사 례		창업 여부
A개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조직변경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개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위장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개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법인전환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개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승계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가 (개인)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이전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가 (개인)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확장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업종추가

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 중 앞에서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업종”에 해당)
2. “갑” 장소는 기존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사업장
(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접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경계(담, 출입문, 도로 등)를 두고 있어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 신규사업장에 해당)
3. “A명의로”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

* 상기 표는 창업길라잡이의 「창업상담 표준해설서」에서 발췌한 것으로 참고목적으로만 활용 바람

(참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36조)

<p>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합의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 또는 조합의 재산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거나 소유한 주식 또는 지분을 매입하는 행위</p> <p>가. 해당 업무집행조합원</p> <p>나.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p> <p>다.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주주와 그 배우자</p> <p>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계열회사.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열회사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영하는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 2) 그 밖에 벤처투자조합과 그 조합원의 이익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목적회사 등 법인 또는 단체 <p>마.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 및 그 계열회사</p> <p>바.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투자조합 2) 벤처투자조합 3)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4)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2. 투자심의위원회 운영

-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총회(결성총회)에서 승인받은 ‘투자의사결정기구 운영방안’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이하‘투심위’)를 구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함

구분	주요 내용	관련 문서	비고
업무집행 조합원의 독립적 의사결정 구조	<p><투자의사결정기구 운영방안 필수조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심위에 한국모태펀드는 옵저버로 참여 · 투심위 운영방안 변경 시 조합원총회를 통해 승인 <p><권장 투심위 진행 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위원(출자자 지명 위원 등) 찬성 없이 승인 가능한 의결 구조 · 규약에 적시된 사항 이외에는 투자와 관련된 제한 및 의무가 없는 구조 (출자자, 대주주 또는 외부기관 포함) 	투자의사결정기구 운영방안	조합원총회 결의사항
투심위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약상 ‘미투자자산’을 제외한 모든 투자 대상 	규약	
투심위 개최 및 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심위 개최 5영업일 전까지 준법사항 체크리스트(날인본)와 심사보고서를 VICS를 통해 통보 · 투심보고서에 <주요 투자조건 요약서>¹⁾ 첨부 · 투자가 규약에 정한 의무투자(인정투자, 주목적투자, 특수목적투자)²⁾ 해당 여부를 정확히 기재 · 투심위 종료 후 2영업일 이내(투자금 집행 전) 주요한 투자조건이 기재된 투심위 의사록³⁾ (날인본)을 VICS를 통해 통보(부결 포함) · 투심위 개최 후 주요 투자조건 변경 시 투심위 재개최 	준법사항 체크리스트/ 심사보고서/ 투심위 의사록	5영업일 전 개최 통보/ 결과는 즉시 VICS업로드 (투심위가 취소된 경우에도 ‘취소’ 보고)

구분	주요 내용	관련문서	비고
복수 계정 투자 시 준수사항 (이해상충 문제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정 간 이해상충 문제 해소를 위해 업무집행조합원 내부 투자자금 배분 관련 지침 구비 해당 지침에 따라 각 계정별 투자재원이 자펀드에 배분되는 의사결정의 근거와 과정을 명확화 * 필요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투심위 회의록에 펀드별 대표펀드매니저의 편입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명시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 <p>· 후행투자 시, 투자심의위원회 완료 후 조합원총회 개최가 원칙</p>	운용사 내부의 투자금 배분 지침	
투자금 분할 집행 시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금을 분할하여 집행할 경우 분할 집행 사실 및 집행조건 등의 정보를 투자심사보고서 및 투심위 의사록에 명확히 기재 * 투자집행 사전보고 시, 해당 분할집행 이전까지의 집행총액과 집행내역을 포함하여 사전보고 	심사보고서 / 투심위의사록	
의무투자 관련 증빙서류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정투자, 주목적투자, 특수목적투자해 해당될 경우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 조합별 관리철에 보관 창업자 또는 초기기업 판정과 관련하여, 업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의 관리철에 보관 	법인등기부등본/벤처기업인증서/특허증 사본/신주 여부 확인 가능서류 등	
투자 및 사후관리 담당심사역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굴, 심사한 심사역(기여율 기재) VICS를 통해 통보 사후관리 담당 심사역 기재 * 심사역 변동 시 담당 기간 포함 		
피투자기업 부실징후, 법령위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실금융거래(가압류, 소송 등 포함), 신용불량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배임, 횡령, 사기 등과 같은 업무 관련 법령위반 내역이 있는지 확인 상기 부실징후/법령위반을 확인하였으나 종합적 판단의 결과로 투자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근거를 투자심사보고서에 기재하고, 투자금이 본래 사용용도에 따라 집행되도록 유의하여 사후관리 	관련 증빙 서류	

- o 투심위 개최 후, 투자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하기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여야함

구분	변경 조건	변경 절차
주요 투자조건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투자금액 · 투자단가 · 투자방식(형태) : 상환전환우선주, 보통주, CB 등 · 상환조건 : 행사기간, 이자율 등 · 전환조건 : 전환비율 등 	<u>투자심의위원회</u> <u>재개최</u> (투자금 집행 전)
중요하지 않은 투자조건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주요 투자조건 외 	조건변경 내역 및 사유 <u>VICS 수시보고</u>

* 투자금이 집행된 후, 주요 투자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심위에 준하는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야 하며, 그에 대한 증빙과 함께 조건변경 내역 및 사유를 VICS 수시보고

1) 주요 투자조건 요약서 (예시, 지분투자)

구분	내용	비고
투자업체명	(주) 000	
총 투자금액	1,000,000,000원	
투자조합	0000조합 : 00억원 0000조합 2호 : 00억원 / 본계정 : 00억원	
동반투자내역 (타 GP 등)	총액 : 00억원(GP 포함) A조합(A창투) : 00억원 / B조합(B창투) : 00억원	
투자방식(형태)	보통주/우선주/CB/BW, 신주/구주	
투자단가	· 액면가 : 000원 · 투자단가(전환가) : 00000원 · 기업가치(투자후) : 000억원	
인수주식수	· 000주	
주요 조건	· 지분율 : 00.0% · 전환조건 : · 상환조건 : · 기타 주요 조건(리픽싱조건 등) :	
투자금 사용용도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 관련 이자율		
투자금 사용용도 위반 시 제재 방안		

2) 의무투자 기준

구분	주요 내용
인정투자	· 벤처투자법 제51조에서 정하는 투자
주목적투자	· 규약 “투자의 방법” 조항 등에 규정된 조합의 투자의무비율 대상 투자
특수목적투자	· 규약 “기타 특약사항” 조항 에 규정된 조합의 특수목적 투자의무비율 대상 투자

* 주목적투자 및 특수목적투자 기준은 규약에 따라 상기 내용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3) 투심위 의사록 기재사항

구분	주요 내용
필수 기재사항	피투자기업명(사업자번호), 프로젝트명, 투자형태, 투자금액, 투자단가, 주식 수 등 주요 투자조건, 의결정족수 충족여부
부수적 기재사항	투자자원 배분, 투자금 사용목적, 투자기업의 각종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건 등 업무집행조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투자계약 체결

0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심위 결의 후 투자기업과 투자계약 체결 시 다음 사항 고려 필요

구분	주요 내용	비고
투자계약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심위에서 의결된 투자심사보고서상 투자조건과 동일한 투자계약서 작성 투자계약서에서 근거법령 및 규약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에 대해 투자집행일로부터 투자잔액에서 제외 심사보고서에 투자기업의 각종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이자율은 개별 조합규약의 내용을 따르며, 이를 투자계약서에 반영 	
투자계약서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약에 정해진 기간 이내에 VICS를 통해 투자계약서 제출 투자계약서 제출 시 VICS를 통해 투자조건 일치 여부 및 의무기재사항 작성 여부 확인 투자계약서 제출 시 <투자계약서 주요 투자조건>¹⁾ 제출 	투자계약서/ 투자계약서 주요 투자 조건 업로드
투자금 사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심사보고서에 기재된 투자금 사용처를 투자계약서에 명시 사용처 실사 근거 및 위반 시 제재방안 등 명시 투자기업의 중요 금전거래 및 투자 사항 관리 포함 투자계약서의 투자금 사용용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집행조합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할 경우에만 그 외 용도로 자금 사용 가능 	
대상거래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기업이 투자금액을 투자계약서에 기재된 용도로 자금을 집행하기 전, 제3자에게 자금의 대여 또는 제3자의 주식을 매입한 경우를 파악할 수 있는 관리 방안과 발생 시 처리방안을 투자계약서에 반영 투자업체가 투자금액을 투자계약서 기재 목적으로 집행하기 전, 대상거래를 한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대상거래의 자금출처를 파악하여 특별조합원에게 보고 	
이면계약서 작성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에서 금하는 이면계약서²⁾ 작성 금지 	

이해관계인 연대책임 요구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의 또는 중과실과 무관하게 이해관계인에게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투자계약은 규약상 금지 · 해당 조항이 규약에 없는 경우에도, 모태출자조합은 상기와 같은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것을 권고함 	
------------------------	---	--

1) 투자계약서 주요 투자조건 (예시)

구분	주요 내용	계약서
투자업체	(주) 000	00조 0항
총 투자금액	1,000,000,000원	00조 0항
투자조합	0000조합 : 5억원 0000조합 2호 : 5억원	00조 0항
투자방식(형태)	보통주/우선주/CB/BW, 신주/구주	00조 0항
투자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면가 : 000원 · 투자단가(전환가) : 000원 · 기업가치(투자후) : 000억원 	00조 0항
주요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율 : 10% · 전환조건 : · 상환조건 : · 기타 주요 조건 : 리픽싱 조건 등 	00조 0항
투자금 사용용도		00조 0항
투자금 사용용도 위반 시 제재 방안		00조 0항
투자금 사용처 실사		00조 0항
대상거래 인지방안		00조 0항
대상거래 발생 시 처리방안		00조 0항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 관련 이자율		00조 0항

2. 이면계약 관련 법령 해석 사례

<이면계약 관련 법령 해석 사례 (법무법인 태평양)>

* 이해를 돕기 위한 법무법인의 해석 사례로 공식적인 법률 해석은 아님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10조 4항 8호 및 동 시행규칙 제8조 3항을 고려할 때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정식투자관련 계약서에 없는 조건을 설정하는 이면합의**”로 해석
- “**부당한 목적**” 이라 함은 창업지원법 입법취지 및 창투조합 설립목적에 잠탈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기 위한 것이나 창업투자조합이 투자를 받는 중소기업보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창투조합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설정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해석
- “**이면계약**”과 본계약에 부수되는 계약은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주주간 합의서 및 주식인수계약서를 체결 및 본 계약서의 애매한 문구 등을 보완하는 계약서 등을 이면합의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4. 피투자기업 사후관리

- o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 후 투자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투자기업 성장지원 시 아래 사항을 고려한 사후관리 필요

구분	주요 내용	비고
투자기업과 특수관계인 간 자금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의 사용용도 집행완료 이전에 특수관계인과 자금거래(차입금 상환, 자금대여 등) 발생 여부 확인 · 발생 시 해당 재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명과 철저한 관리 필요 	
재무구조 부실화 기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기업 중 재무구조 부실기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그 대응방안 수립·실시 필요 · 재무구조부실화 진행, 감액, 휴·폐업 발생 시에는 특별조합원에 즉시 수시보고 	
복수계정 공동투자 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계정과 공동투자한 후 매각 시, 계정별로 동일한 시점·조건·비율로 매각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원칙에 벗어날 경우 다음의 조치사항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에 이해상충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각원칙, 의사결정 근거(계정별 대표펀드매니저의 매각에 대한 견해차이 또는 조합 만기임박 등)를 명확히 하여 조합원에게 통보할 것 - 미투자자산 운용에 있어서도 복수계정에서 동일한 상장주식을 취득, 매각하는 경우 상기 원칙 적용 · 이해상충 여부 판단 시에는 매각 조건 뿐만 아니라 매각원칙의 일관성 및 매각시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사전보고 권장 	
업무집행조합원의 기업가치 제고 활동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보고회(영업보고회) 보고양식 중 ‘투자기업별 현황’을 통해 출자자에게 업무집행조합원의 기업가치 제고 활동을 적극적 보고 	

o 기타 추가 보고사항

- (1) 피투자기업 고용인원을 VICS를 통해 입력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첨부하여 보고
(보고시기 : 매 분기 말로부터 7일 이내)
- (2)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SIMS) 정보 활용 동의서 징구
 - 피투자기업에 대해 투자 진행시, 한국모태펀드의 SIMS자료 활용에 대한 동의서 징구 및 전산시스템(VICS) 업로드
 - 동 정보 활용 동의서는 이미 SIMS에 취합된 자료 활용에 대한 동의서로, 해당 동의서를 근거로 한국모태펀드가 피투자기업에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음

참고 : SIMS 운영 근거

- ▶ 국무총리훈령 제611호(중소기업정책정보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에 관한 규정)
-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4(통합관리시스템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
-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2016-57호
- ▶ “예산 사업, 조세 등 비예산지원 등 중소기업지원 제도를 총망라하는 디렉토리 구축할 것”(국가재정전략회의 '14.5.2.)

5. 소셜임팩트펀드 민간 자문단 심의회 운영

- 한국모태펀드 선정 당시의 출자사업 계획 공고를 근거로 자펀드 운용사가 민간 자문단 심의회를 자율적으로 개최하여 소셜임팩트 투자 해당 여부를 판단 받도록 함

<공고 내 소셜임팩트 주목적 투자대상 (예시)>

- 재무적 성과와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혁신성·성장성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인 소셜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70% 이상을 투자
 -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범위는 운용사가 Track1, Track2 중 선택하여 제안
- * Track1을 선택할 경우, 운용사는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투자 대상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판별표를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상세내용은 선정 당시 모태펀드 출자사업 공고문 참조)

※ 주목적대상 적합 여부는 민간 자문단이 사전 및 사후 평가할 수 있음

- 민간 자문단 심의회에서 개별 투자 건이 소셜임팩트 투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며, 심의회 세부 운영 가이드는 아래와 같음

① 민간 자문단 심의회 구성

- 민간 자문단 심의위원은 운용사가 소셜임팩트 민간 자문단 Pool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
- 심의위원은 동일 조합의 심의회에서 최대 10개의 투자건 평가 가능
- 동일 조합의 심의회에서 동일한 심의위원 구성으로 최대 5개의 투자건 평가 가능

② 민간 자문단 심의회 평가

- 선정 당시 제안한 판별표에 근거하여 운용사가 주목적 해당여부를 설명하고, 심의위원은 이를 중점으로 논의 및 평가함. 소셜임팩트 판별기준과 무관한 설명(사업성, 수익성 등) 및 질의답변은 최대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투자건별 사전 평가가 원칙이며, 사후 평가 시 투자 당해연도 내 평가
 - * 단, 부득이한 경우 KVIC 담당자와 협의 하에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사후 평가 시 평가시점까지 준법사항 체크리스트 등에 공고문상 주목적대상 해당여부‘부’로 기재. 평가 후 변경사항 VICS 재업로드
- 재평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 동일조합에서 2년 내 후속투자를 시행하는 경우 기평가결과 준용 가능
- 비콥(B-Corp)인증/사회적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은 민간자문단 평가 없이 공고문상 주목적 투자로 인정

③ 민간 자문단 심의회 개최 사전 및 사후 보고절차

시기	주체	보고 내용
사전	운용사	민간 자문단 심의회 개최내용(심의회 소요시간 포함)을 5영업일 전 이메일 통보 및 VICS 총회 및 공문접수 등록
사후	심의위원	심의회에서 운용사로부터 전달 받은 평가서양식에 투자건별 평가를 시행하고, 심의회 개최 익일까지 한국벤처투자 담당 심사역에게 원본 및 스캔본 제출 * 평가결과 운용사 측에 직접 공개 불가
	운용사	한국벤처투자 담당 심사역이 전달한 평가결과 취합본을 확인 후 VICS 업데이트

④ 민간 자문단 심의위원 평가 수수료

기준(1일당)	평가수수료 (VAT 별도)
2시간 미만	20만원
2시간 이상	40만원

* 심의위원 평가 수수료는 상기 기준을 고려하여 정하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조합원 사전보고 필요

한국벤처투자 벤처펀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문화콘텐츠 분야)

I. 목적 및 적용범위

1. 목적

- 한국벤처투자 벤처펀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문화콘텐츠 분야)은 업무집행조합원이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모펀드의 출자펀드를 문화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결성 목적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방향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적용범위

- 한국벤처투자 벤처펀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문화콘텐츠 분야)은 문화콘텐츠 투자 관련 법령과 한국모태펀드의 문화영화계정 자펀드 규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법 및 그 밖의 한국벤처투자 권고사항으로 이루어짐
- 본 내용은 구속력 있는 법규는 아니지만, 업무집행조합원의 조합 관리를 위한 세부 적용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급적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참조하여 업무 처리할 것을 권고함
- 본 가이드라인에 사례로 제시되는 부분은 당사에서 임의로 재편집한 내용으로 참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실제 업무에 인용할 때는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문화콘텐츠 분야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자펀드 운영은 본 가이드라인 “공통 사항”의 관련 내용을 참고할 것

II. 문화 · 콘텐츠 자펀드 운용

1. 투자 가능 분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2. 주요 출자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의 거래

① 법, 규약에 따른 투자 제한 사항

구분	주요출자자와 거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거래
용어의 정의	<p>‘주요출자자’라 함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경우 그 본인인 출자자를 말함 <p>(벤처투자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호의 ‘라’목)</p>	<p>‘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 발표
	<p>‘주요출자자와 거래’라 함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투자의 경우 주요출자자가 직접 제작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하는 행위를 말함 	<p>‘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거래’라 함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투자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직접 제작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하는 행위를 말함
창업지원법에 따른 거래 제한	<p>원칙적으로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거래하는 경우는 가능함(시행령 제10조 제4항 제1호 라목의 4) 	<p>원칙적으로는 금지(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이나, 예외조항(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여 투자가 가능</p> <p>1) 중소기업과 공동제작 할 경우 : (규정 제6조 제6항) 2개 이상의 기업이 프로젝트 개발 또는 제작에 참여하고 개발 또는 제작으로 인한 수익 지분 중 중소기업 비중이 70% 이상인 사업</p> <p>2) 해외 진출 프로젝트 : (규정 제6조 제6항)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제7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사용되는 순제작비 중 중소기업 참여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p>

구분	주요출자자와 거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거래
<p style="text-align: center;">규약에 따른 거래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에서는 조합원 전원동의 시 주요 출자자와의 거래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규약에는 정책목적상 글로벌펀드를 제외하고 금지 * 관련 법에서는 주요 출자자가 메인투자, 배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제한이 없으나 문화계정 출자조합 규약에는 정책목적상 주요 출자자가 메인투자, 배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제한 <p style="text-align: center;">주요출자자가 메인투자, 배급하는 프로젝트 제한 관련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출자자가 메인투자, 배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금액은 조합 전체 투자 누계액의 00%이내여야 함 (재무적출자자 펀드 제외) - 조합 해산 시에 비율 준수 여부를 판단. GP는 주요 출자자가 메인투자, 배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비율을 상시 관리할 것을 권고 - 주요 출자자가 다수인 경우는 주요 출자자별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출자자에 대한 투자금액의 합으로 비율 적용 - 출자자 관련 프로젝트 중 제작완료 후 배급·유통 단계 프로젝트 투자 금지 <p>* 구체적인 투자제한 대상은 개별규약 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에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제작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정책목적상 규약에는 글로벌펀드를 제외하고 금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메인투자, 배급하는 경우는 투자가능 *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조합 주요 출자자인 경우에는 주요 출자자와의 거래 제한 규정 적용 <p style="text-align: center;">(2015년 1차 선정조합부터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배급하는 한국 영화 프로젝트 투자 금지(단,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제외) * 구체적인 투자제한 대상은 개별규약 참고

② 주요출자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의 거래 요약

구분	주요출자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작	<p style="text-align: center;">금지 (단, 글로벌펀드의 경우 조합원 전원동의 시 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금지 (단, 글로벌펀드의 경우 문전사 설립 시 가능)</p>

구분	주요출자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메인투자 배급	가능 (단, 투자누계액의 00%이내에서 가능)	가능 (단, 글로벌펀드의 경우 문전사 설립 시 가능)

* 구체적인 투자제한 대상은 개별 규약 참고

III. 프로젝트 투자

1. 프로젝트 투자의 정의

o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정의는 ‘벤처투자법 시행 규칙’ 제2조에서 규정

<벤처투자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이 개발·제작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인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지분인수(이하 “프로젝트 투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총사업비용 중 연구개발비용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3.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의 창출·매입·활용
4. 「스포츠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
5.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프로젝트 투자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프로젝트 투자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프로젝트 투자의 대상에 대해서는 포괄주의가 아닌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음
-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 투자는 투자의무비율에 포함되지 않음

2. 해외 프로젝트 투자

-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해외 프로젝트 투자가 가능함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3조(투자대상 및 방법 등)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의 투자를 말한다.

1. 해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2. 해외 기업이 발행하는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3. 해외 기업이 제작하고 국내 중소기업이 제작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기로 약정되었으며, 규칙 제2조에 따른 프로젝트 투자
4. 해외투자기구(벤처투자조합과 유사한 방법으로 타인의 자본을 모집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5.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해외기업의 지분 인수

- 국내 중소기업의 제작 참여는 후반작업 등의 참여를 의미하며 국내중소기업의 참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함

3. 프로젝트 투자의무비율 산정 기준

- SPC 설립 등으로 인해 자펀드의 투자금이 입금되는 투자기업과 프로젝트를 제작하는 제작사가 상이한 경우, 법과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의무 비율 산정 시 투자기업이 아닌 제작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예시1) 제작사 A는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투자금을 입금한 자금관리회사 B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 자금관리회사(B)가 아닌 제작사(A) 기준으로 판단 : 인정투자에 해당되지 않음

(예시2) 상장기업 C가 문화산업전문회사 D를 설립하여 프로젝트를 제작하고, 조합이 문화산업전문회사 D에 투자한 경우

=> 문화산업전문회사(D)가 아닌 제작사(C) 기준으로 판단 : 인정투자에 해당되지 않음

- 규약상 동일 기업 및 동일 프로젝트 투자한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제작사를 기준으로 하여 한도를 준수해야 함

예) 제작사 A가 제작하는 프로젝트 a에 3억원, 프로젝트 b에 5억원을 투자하고, 20억원을 해당 제작사에 우선주 지분투자를 한 조합은 전체 합산 금액인 28억원이 규약상 동일 기업 및 동일 프로젝트 투자한도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프로젝트 투자는 ‘창업자’, ‘벤처기업’,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이 제작하는 프로젝트까지 인정 및 주목적투자에 해당

- 2개 이상의 기업이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제작사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작사가 제작으로 인한 수익 지분의 70% 이상을 보유하거나, 순제작비 중 참여비중이 50% 이상이어야 인정 및 주목적투자에 해당

: 위 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 제작사를 기준으로 준법사항체크리스트를 작성하되, 투자심사보고서에는 공동제작사명 등을 포함하여 공동제작

프로젝트임을 명시

- 인정투자자와 달리, 주목적투자 및 특수목적투자는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투자시점에 제한을 받음

: 개봉 60일 이전 투자가 아닌 경우, 주목적 및 특수목적투자에 미해당

<프로젝트 투자의무비율 산정 시 참고사항>

(2010년 1차 출자사업부터 반영)

- 한국영화 제작 이후 영화 배급·유통 단계(개봉일 이전 60일 이내)에 투자되는 경우 주목적 투자 의무비율 산정 시 제외
- * 개봉일은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 ** 개봉일로부터 60일 이전 투자인지 여부는 사후적으로 판단. 투자 당시 주목적, 특수목적 투자비율에 포함했더라도, 실제 개봉 후 개봉 전 60일 이전 투자가 아닐 경우, 개봉일이 확정된 때에 이를 투자의무비율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함 (미해당 투자로 변경)

(2015년 1차 출자사업부터 반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배급하는 한국영화 프로젝트에 투자 금지(단,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제외)
- 주요 출자자 제작 프로젝트 투자금지
- 출자자 관련 프로젝트 중 제작완료 후 배급·유통 단계 프로젝트 투자금지
- * 제작완료는 크랭크업을 의미. 크랭크업 일자는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 **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개별 규약마다 상이할 수 있음

4. 원금보장성 프로젝트 투자

구분	주요 내용
프로젝트 투자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금보장성 프로젝트 투자 또는 원금상환약정 규약상 금지 · 해당 조항이 규약에 없는 경우에도, 모태출자조합은 상기와 같은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것을 권고함

5. 표준계약서 사용

- 프로젝트 투자 시, 문화체육관광부(관련 공공기관 포함)가 수립한 표준계약서(방송영상(방송영상 제작, 방송출연, 방송영상제작스태프, 방송작가집필), 영화(근로, 시나리오, 투자), 공연예술 등) 적용
 - 해당 조항이 규약에 반영된 펀드 : 의무 적용
 - 해당 조항이 규약에 반영되지 않은 펀드 : 권고사항
- 투자 집행 이전에 '표준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이 이미 체결된 프로젝트는 기존 계약을 '표준계약'으로 수정 혹은 변경할 경우만 투자 가능

6. 영화 인센티브 관련 투자 제한

- 영화제작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부담하는 재무적 투자자가 수익배분 과정에서 감독과 배우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까지 과도하게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재무적 투자자의 공정한 영화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감독 및 배우 인센티브 관련 투자 기준 마련
-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감독, 배우 등) 및 그의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이 제작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프로젝트 전체 비용으로 지급하는 프로젝트 투자 금지

7. 프로젝트 제작 관련 투자기준

- 타 제작사 또는 타인 명의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의 모태 자펀드 투자 금지

IV. 프로젝트 투자 사후관리

1. 투자심의자료

① 투자심사보고서의 작성

- 프로젝트 투자심사보고서 작성 시 제작사, 투자금 입금 기업(SPC 등), 프로젝트에 대한 ‘주요 투자조건 요약서(프로젝트투자)¹⁾’를 심사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함

¹⁾ 주요 투자조건 요약서 (예시, 프로젝트투자)

투자개요 (총괄)	제작사	
	투자금 입금 회사	
	프로젝트명	
	실제자금관리자	
	배급사	
	총 투자금액	1,000,000,000원
	투자지분	투자지분율 : 00%
	투자조건	수익배분 비율 등
	투자금 사용용도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 관련 이자율	
	투자금 사용용도 위반 시 제재 방안	
제작사 개요	설립일	
	대표이사	
	재무사항	
	주요연혁	
투자기업 (SPC) 개요	설립일	
	대표이사	
	재무사항	
	주요연혁	
	자금관리자	
	사업관리자	

프로젝트 개요	총제작비	
	총제작비 구성 내역	
	배급사	
	실제자금관리자	
	개봉예정일	

② 준법사항체크리스트의 작성

- 준법사항체크리스트는 투자금 입금 기업을 명시하되 제작사 기준으로 작성해야 함

2. 투자 시 VICS 입력항목

① 투심위 등록 시 자료 입력

- 제작사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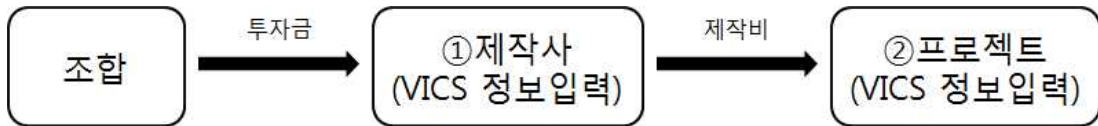
	구분	주요 체크 내용
제작사	담당심사역	
	투심일자	반드시 5영업일 전 보고
	투심시간	
	투심장소	
	투자업체(=제작사)	
	대표이사	
	자본금	
	설립일자	
	사업자번호	
	업종	
	투자금액	
	프로젝트명	
	인정/주목적/특수목적 여부	각각 해당 사항 체크
	투심보고서	파일로 첨부
	준법사항체크리스트	파일로 첨부(날인 필요)

- SPC(문화산업전문회사 등)을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
(제작사와 투자금을 입금하는 회사가 다른 경우)

	구분	주요 체크 내용
공 통	담당심사역	
	투심일자	반드시 5영업일 전 보고
	투심시간	
	투심장소	
S P C	투자업체명(=SPC 등)	
	대표이사	
	자본금	
	설립일자	
	사업자번호	
제 작 사	실제 제작사 업종	
	실제 제작사명	
	대표이사	
	자본금	
	설립일자	
	사업자번호	
	투자금액	
	프로젝트명	
	인정/주목적/특수목적 여부	각각 해당 사항 체크
	투심보고서	파일로 첨부
	준법사항체크리스트	파일로 첨부(날인 필요)

② VICS 월보고(매월 7일까지)시 입력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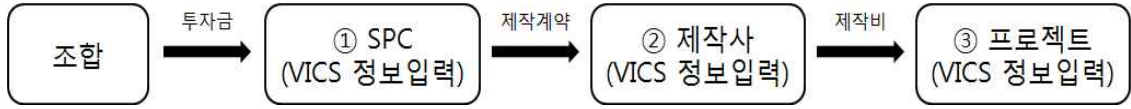
- 제작사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



분류	구분	주요 체크 내용
① 제작사 (기업)	설립일	
	대표자	
	주요제품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결산월	
	종업원수	
	상장여부	
	상장일자	
	홈페이지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주주명부	
②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유형구분	영화/공연/게임 등
	제작사명	
	배급유통사명	
	감독명	
	주연배우명	
	제작시작일자	
	제작종료일자	
	개봉일자	
	상영종료일자	
	총전국관객수	상영 종료 후 반드시 수정하여 기입
	손익관객수	
	시놉시스개요	
	본건투자금액	
	원화순제작비	
	총제작비	
	마케팅비	
심사역	발굴자, 사후자 등 구분하여 입력	

* 투자된 프로젝트의 분야(영화, 게임, 방송드라마, 공연 등)에 따라 일부 입력 내용은 다름

- SPC(문화산업전문회사 등)을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 SPC 정보와 제작사 정보를 모두 입력



분류	구분	주요 체크 내용
① SPC	사업관리자	
	자금관리자	
	제작사	실제 제작사명을 기입
	대표이사	
	자본금	
	설립일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② 제작사 (기업)	기본정보	위 표와 동일
③ 프로젝트	기본정보	위 표와 동일

③ 프로젝트 투자 시 산업별 분류

- 벤처캐피탈협회 프로젝트 유형 분류 준용(VICS 월보고 등록 메뉴 확인)

3. 별도계좌 개설 · 운영

① 별도계좌 개설에 대한 규정

-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실제 자금을 관리하는 자가 모두 별도 계좌 개설 필요 (규정 제7조의2 2항)
-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제작사이며 실제 자금을 관리하는 자에 대한 판단은 펀드 투자금의 흐름을 통해 판단

② 별도계좌 개설 및 운영 방법

(예시1) 조합에서 제작사에 입금한 자금이 즉시 메인투자사에 입금되는 경우

- 제작사는 사업수행자, 메인투자사는 실제 자금관리자에 해당됨 : 이 경우 각각 별도의 프로젝트 통장을 개설하여 자금 관리를 해야 함

* 다만, 메인투자사에서 제작비로 선집행한 제작비를 상환하는데 제작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메인투자사 프로젝트 통장에서 메인투자사 본계정 통장으로 자금을 입금하는 것이 가능

(예시2) 조합에서 제작사에 입금한 자금이 제작사에서 바로 사용되는 경우

- 제작사는 사업수행자이면서 실제 자금관리자에 해당됨

- (계약체결) 조합은 투자계약 체결 시 사업수행자와 실제 자금관리자의 별도계좌 개설의무를 계약서에 명기해야 함
- (시점) 사업수행자와 실제 자금관리자는 투자를 받는 시점부터 프로젝트 종료 시점까지 별도계좌를 개설 운영하여야 함
- (대상) 프로젝트 전체 제작비와 매출은 모두 별도계좌를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별도계좌를 통해 제작비와 매출 내역이 확인 가능해야 함

4. 감사보고서 작성

- (시점) 프로젝트가 제작 완료되어 상용화(영화: 개봉, 드라마: 방영 등)된 후, 감사보고서를 VICS에 등록
- (형태) 1. 회계법인이 발행한 보고서
2.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투자금 사용 내역 및 투자금의 적정한 사용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의 확인서 (증빙자료 첨부)로 대체 가능
- (내용) 보고서 작성 시점으로 제작비용 사용 내역 및 매출 발생 내역, 투자자 구성 및 배분내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보고서 작성 비용) 제작비에 포함시킴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조합비용으로 집행 가능

한국벤처투자 벤처펀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FAQ)

순번	질 문	답 변
1	계약당사자가 문화산업전문회사인데 준법사항체크리스트상 창업자/벤처 기업/중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해당 프로젝트의 실제 제작사를 기준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규약상 투자의무비율 달성 여부 판별 기준일자는 투심위 승인 기준인가요? 아니면 자금집행일 기준인가요?	조합에서 투자의무비율 달성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일자는 자금집행일 기준입니다. * 투심위 승인일자는 효력이 없으므로 투자기간 내 투자금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진행하시면 됩니다.
3	투자기간이 경과한 A조합의 기투자업체에 대해 B조합이 투자 시 A, B 조합 모두 후행투자에 따른 조합원총회가 필요한가요?	투자단가의 적정성 문제, 투자금 회수 시 이해상충 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조합원 총회 개최대상이 맞습니다.
4	금년 5월에 결성되었으며 투자 건이 없는 상태인데 6월말 기준 반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또, 투자보고회를 개최해야 하나요?	보고시점에 조합이 결성된 상태이므로, 투자 건 유무와 무관하게 영업보고서 작성 및 투자보고회 개최 대상입니다. 투자실적이 없다면 투자보고회 시 향후 운용계획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5	청산중인 조합도 영업보고서 작성 및 투자보고회를 개최해야 하나요?	청산중인 조합도 잔여 포트폴리오 현황 파악이 필요하므로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VICS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투자 보고회는 개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	규약이 부분적으로 변경될 경우 개정규약을 전체 조합원들에게 날인 받아야 하나요?	규약 개정은 조합원총회를 거쳐 진행되며, 총회 의사록으로 조합원들의 의사결정내역이 확인 가능하기에 당사는 개정규약 날인을 의무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정본 파일을 VICS에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7	일반펀드매니저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나요?	조합원총회 부의대상은 아니나 사전에 KVIC 사후관리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 수시보고를 통해 변경내용(변경사유, 변경시점, 대체인력 인적사항 등의 주요 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	조합 핵심운영인력이 변경에 따라 조합원총회 개최 예정인데, 규약 개정의 건으로 별도안건 부의가 필요한가요?	대표펀드매니저 등 핵심운영인력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명시되는 사항이므로 규약 개정이 필요합니다. 조합원총회 개최 시 별도 안건으로 부의바랍니다.

순번	질문	답변
9	출자증서 원본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p>조합 규약에 따라, 아래 해당하는 모펀드의 수탁은행에 우편으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태펀드: (04538) 서울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5층 KEB하나은행 수탁영업부 (한지선 대리) 2. 일자리창출펀드1,2호: (150-973)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14 한국산업은행 신탁부 (홍채아 대리) 3. 산업기술사업화모펀드: (100-151) 서울시 중구 통일로120 NH농협은행 신관13층 수탁업무부 (이동형 과장) 4. 엔젤모펀드: (100-151)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 NH농협은행 신관13층 수탁업무부 (이동형 과장)
10	조합에서 배분을 하려는데 모펀드 배분금 입금계좌가 어떻게 되나요?	<p>배분금 입금계좌는 모펀드(모태펀드, 일자리창출펀드 등)와 출자계정(중진·문화·특허 등)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계좌번호는 KVIC 사후관리 담당자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p>
11	잔여자산 평가 시 상장주식도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평가해야 하나요?	<p>상장된 유가증권일 경우 전문 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조합 청산일까지 처분되지 않은 자산이 남아있을 때, 규약의 의거 분배일 30거래일 전부터 분배 직전일까지의 증가평균을 기준으로 평가)</p>
12	구주유통망을 필수적으로 이용하여 매각하여야 하나요?	<p>규약에 VC구주유통망 이용이 명시되어 있는 조합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12년도 개정 기준규약부터 반영)</p>
13	조합의 설립일 또는 해산만기일이 월중에 속해 있을 때에는 1개월 이내 기간에 한해 1년을 초과할 수 있나요?	<p>12월 결성(결성총회일 기준) 조합은 다음 사업연도의 회계감사에, 1월 해산조합(해산총회일 기준)은 이전 사업연도의 회계감사에 포함하여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p>
14	잔여자산 평가법인으로 기존 조합 회계감사인 선임이 가능한가요?	<p>기존 조합회계감사인은 해당조합 잔여자산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p>

순번	질문	답변
15	회계감사인 선임 시 제안서 접수 등 자체 입찰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규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입찰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동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최대 회계감사보수 범위 내에서 조합 및 업무집행조합원과 이해상충관계가 없는 회계법인으로 선정하시면 됩니다.
16	해산감사 또는 청산감사 목적으로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기존조합 감사인도 선임가능한가요?	기존 조합감사인도 현재 이해상충 이슈가 없다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17	조합 만기 후 해산총회 이전에 자산 처분이 가능한가요?	조합 만기일 이후 해산총회 시까지 (청산인 선임 시까지)는 자산처분 등 일체의 행위가 불가합니다.
18	CB, BW 등 만기연장 또는 이자율 감경 등 회수조건 변경을 위해 조합원총회를 개최해야 하나요?	회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GP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변경된 사항은 수시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9	조합의 투자기간 종료 후 투자기간 중 투자한 BW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나요?	조합원총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초 투자 시 신주인수권 행사를 가정하고 투자의사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0	기 투자 BW의 신주인수권 행사 시 투심위를 개최하여야 하나요?	신주인수권 행사 시 추가적 투자금 납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투심위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21	조합이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설립과 동시에 투자) 가능한가요?	조합이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22	한국벤처투자조합에서 교환사채(EB) 투자를 할 수 있나요?	교환사채(EB) 투자는 불가합니다. * 단, 해외투자의 경우는 관련 규정에서 투자 형식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5항 등 참조)
23	창업초기·청년창업 투자조합에서 기투자한 특수목적 해당기업을 후속투자 하는 경우, 현재기준으로는 특수목적에 해당하지 않아도 후속투자 건을 특수목적투자로 인정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 조합규약상 근거 조항 확인

순번	질문	답변
24	청년창업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이사 만 39세 이하 대표이사가 한 명만 존재해도 청년창업 특수목적투자자로 인정 가능한가요?	청년창업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이사 전원이 만 39세 이하여야 인정됩니다. * 단, 투자일 기준으로 공동 대표이사 전원이 1년 이상 대표이사직을 유지한 경우는 예외로, 청년창업 요건을 1인만 충족해도 특수목적 투자로 인정됩니다.
25	상장주식의 매도시점은 언제인가요?	주식 매도 주문 시점에 수익금액이 확정되고, 이후에는 매도자가 해당 주식에 대한 효과적 통제를 할 수 없으므로 매도 주문 시점에 투자잔액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매도 대금의 입금시점이 아닙니다.

